변 경 대 비 표

[신탁계약서]

1. 펀드명 :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1.11.5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3.08.29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1.15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6.25 개정)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3 월 08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제 2 조(용어의 정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생략) (신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현행과 같음) **9.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생략) (신설) ③(생략)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모자형(자투자신탁)** ③(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 (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생략)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28 시행)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투자목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3.08.29 시행) 투자대상자산 명확화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1 의 2. 제 1 호의 주식을 발행한 기업 중 전기전자 업종 등에 속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및 부품 등을 생산하는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제 3 조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기업의 주식을 "IT 관련주식"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IT 관련주식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연도에 IT 관련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은 IT 관련주식으로 볼 수 있다. 2.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말한다)**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IT 관련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3.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7.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 19 조제 2 호본문,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 25 조의 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기재사항 보완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신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4. (생략)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신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4. (현행과 같음)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 항 및 제 7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신설)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 40 조(판매수수료)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5 개정)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문구 명확화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9. (생략)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9. (현행과 같음)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생략) 5. 2015 년 1 월 1 일 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5. 2015 년 1 월 1 일 **이후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생략)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1.15 시행)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5.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5. (현행과 같음)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5 개정) 기재상 보완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P, C-PE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	(신설)	부 칙 **1.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2 년 03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1. 펀드명 :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기재사항 보완
- 용어수정 (비교지수 → 참고지수)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3 월 08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요약정보	기재사항 보완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분산투자 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이 높은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투자목적 및 전략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용어수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이하 생략) (신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전기전자 Index 100%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현행과 같음)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추가** * **참고지수(referencemark)** : KOSPI 전기전자 Index 100
요약정보 - 분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요약정보-운용전문인력	정보 업데이트	-	**정보 업데이트**
요약정보-주요투자위험	기재사항 보완	(신설)	**집중투자위험: 집합투자재산을 IT 관련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IT 섹터 주식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 주식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의 성과와도 다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재사항 보완	(신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수익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펀드명 :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투자목적 명확화 및 투자전략 업데이트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추가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5.7.8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1.15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9.16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 기재사항 보완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3 월 08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문서전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문서전반 (해당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문서전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펀드명: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펀드명: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투자결정시	기재사항	(신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유의사항 안내	보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유동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하므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마. 특수형태 (생략) (신설)	마. 특수형태 (현행과 같음)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정보 업데이트	-	**2022 년 03 월 08 일**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변경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table>
<tr><td>5. 가. 운용전문인력</td><td>정보 업데이트</td><td>-</td><td><u>정보 업데이트</u>

<u>{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추가</u></td></tr>
<tr><td>6.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td><td>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td><td>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td><td>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u>모자형(자투자신탁)</u></td></tr>
<tr><td>6. 다. 모자형구조</td><td>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td><td>(신설)</td><td><u>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u>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IT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able>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u></td></tr>
<tr><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td><td>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투자목적 명확화</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u>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u>[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u>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u>추구하는 상품입니다.</u></td></tr>
</table>

8. 가. 투자대상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등	**하나 UBS IT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0% 이상 투자** **유동성자산 : 10% 이하 투자 등**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추가**
8. 나. 투자제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해관계인거래 제한 동일종목투자제한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제한 파생상품 투자제한 등	**이해관계인거래 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추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투자전략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정정전 1) (신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추가** **정정후 1)** **나. (2)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지만, 자산의 일부를 저유동성 종목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① 환매와 신규 설정에 따른 유동성 비율 상시 모니터링** **② 대량환매 등 위기상황 발생시 내규에 의거 사내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동성 확보방안, 판매사 대응방안 등 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③ 일평균거래량 대비 보유비율이 일정 기준 초과하는 비유동주식 정기적인 모니터링**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가.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11.나.(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나.(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12. 가.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문구명확화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생략) 1.(생략)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10.(생략)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10.(현행과 같음)
14. 가. 이익배분	문구명확화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정보 업데이트	-	**정보 업데이트**
3. 가. (3) 의무와 책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생략) (신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시행)		**여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가. 투자자총회 등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1)투자자총회의 구성 (생략)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생략)	(1)투자자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1.나. 잔여재산분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 의무해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같음)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외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3.가.(2)자산운용보고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1.15 시행)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기재사항 보완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신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3.가.(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나.(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기재사항 보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5.7.8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3)(생략)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설)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3)(현행과 같음)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3.나.(2)수시공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11)(생략)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11)(현행과 같음)
3.나.(4)위험지표의 공시	기재사항 보완	(신설)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정정전 1)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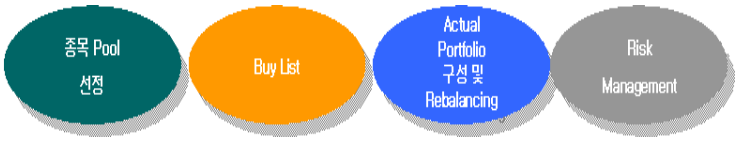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관련 업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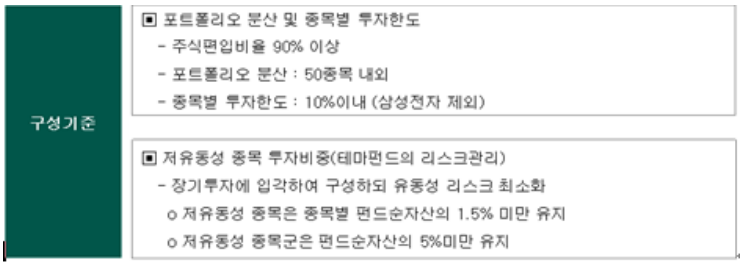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운용 프로세스 (Process)



□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



□ 종목 Pool 선정



정정후 1)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 하나UBS IT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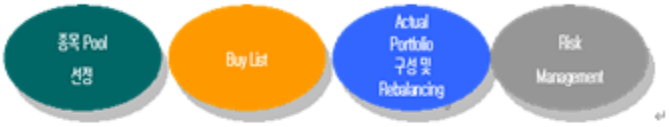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관련 업종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운용 프로세스 (Process)



□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

포트폴리오 구성	•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펀드 규모에 따라 유동적 • 주식편입비율: 90% 이상 수준 • 종목수: 순자산 1,000억원 펀드 기준으로 60~100개 종목으로 구성 • 종목별 투자한도: 10% 이내
편입 상위 종목 기준	• 편입 상위 종목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아래의 성격을 지닌 종목들로 구성 – 안정적 사업구조 – 양호한 재무구조 – 우수한 현금흐름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 종목 Pool 선정

투자 대상 선정	• 유니버스 내 계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업종별 종목별 기초자료 점검 및 선정 • 안정성, 성장성, 사이즈, 유동성 요소 등 고려 • 정기적으로 업종 및 테마별 사이클 점검 투자 대상 우선순위 및 업데이트
포트폴리오 구성	• 업종 및 Sub업종, 테마별 Top-pick 종목 선정 • 업종 및 종목의 사이클 위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비중 구성 • 분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을 안정적인 성과 창출 추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사이클 및 주식시장 국면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시장국면에 따라 알파 창출을 위해 대형주와 중소형주 탄력적으로 비중 조절